



ONE IN BEAUTY

### 제3자 행동 강령

Revlon 은 80년 이상 미용업계에서 상징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선구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은 바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와 함께 청렴함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이 우리가 달성하는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성장은 소비자들의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 고품질 제품, 공급업체, 상업적 파트너 및 기타 제3자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란 토대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vlon 과 미용 포트폴리오 아래에 있는 모든 브랜드는 윤리적인 업무 관행 및 모든 해당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벤더 및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고객 및 사업 파트너, 피인가자, 제3자 제조사, 에이전트 및 기타 대리인, 컨설턴트 및 기타 제3자("제3자 파트너"라 총칭함)도 동일한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Revlon 과 사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서 당사의 사업 관계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제3자 행동 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3자 파트너들이 본 제3자 행동 강령을 조직 전체에 알리고, Revlon 과 함께 또는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모든 직원 및 하청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Revlon 은 적절히 제3자와 협력하여 그들이 제3자 행동 강령의 의도와 요건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제3자 행동 강령의 알려진 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신속히 Revlon 의 [compliance@revlon.com](mailto:compliance@revlon.com)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법률 준수

Revlon과 함께 일하는 제3자로서 여러분은 최고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러분의 국가뿐만 아니라 Revlon과 함께 또는 Revlon을 대신해서 또는 당사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모든 국가의 모든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뇌물수수방지, 독점금지 및 경쟁,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환경 및 보건 및 안전, 노동 및 고용, 제품 제조,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수입 및 수출, 제품 등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지 또는 업계의 관행이 현지의 법적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본 정책의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공급자는 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면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Revlon은 미국 기업으로서 또한 제3자 파트너에게 본 제3자 강령에 개괄적으로 기술된 바와 같이 또는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와 같이 Revlon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일정한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장부 및 기록

Revlon은 당사의 제3자 파트너에게 Revlon의 사업에 관하여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제3자가 부담한 비용이 유효하고 상세한 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서면 합의서에서 상환가능한 비용으로 명시되고, Revlon이 서면으로 사전에 달리 승인한 경우 외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Revlon은 수시로 제3자 파트너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점금지 및 경쟁

Revlon은 당사의 제3자 파트너에게 해당 독점금지 및 경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반경쟁적인 행동을 금지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려 합니다. 금지 대상 행동에는 자유 무역, 재판매가격 유지, 경쟁사 사이의 기밀 정보의 교환, 그룹 보이콧, 불법적인 가격 차별 및 우월적인 시장 지위의 남용을 제한하는 합의 또는 양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뇌물수수, 부패 및 부적절한 선물

리베이트, 뇌물 또는 여하한 종류의 부적절한 선물이나 혜택을 주거나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Revlon은 제3자 파트너들에게 항상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및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을 비롯한 해당 뇌물수수금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Revlon은 제3자 파트너가 Revlon을 대신하여 또는 Revlon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업상 이득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지급, 선물, 접대, 식사, Revlon 제품 또는 가치 있는 다른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제3자를 통한 경우 포함)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정부 관료 또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개인에게 제공되는 가치 있는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Revlon은 현지 법률에 의하여 명백히 허용되고 공적인 영수증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급행료 지급을 금지합니다.

## 기밀/독점 정보

Revlon의 제3자 파트너로서 여러분은 Revlon과의 사업 관계로 인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Revlon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나 실체에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Revlon의 직원, 고객 및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급 또는 저장하는 제3자 파트너는 해당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에 관한 기준 및 업계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환경

Revlon은 모든 지역 및 국가의 환경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제3자 파트너들이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 보건 및 안전성

Revlon은 제3자 파트너들에게 자신의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근로자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공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을 포함하여 시설은 최소한 모든 해당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권

Revlon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불법적인 미성년 노동, 강제 노동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인간 착취 및 용납할 수 없는 근로자 처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과 존엄의 태도로 대하여야 하며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또는 성적인 학대나 부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는 조직과만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Revlon은 제3자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현지의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강제 노동, 노예 제도 또는 교도 작업을 이용하는 행위
- 미성년 노동을 이용하거나 15세(국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14세) 이하 또는 국가가 정하는 최소 고용 연령(둘 중 보다 높은 연령) 이하의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 차별이나 기타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징계 조치를 이용하는 행위
- 근로자를 성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용서하는 행위
- 인종, 신조, 피부색, 종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성, 연령,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장애, 혼인 여부, 동반자 관계, 가족 관계, 전역/군인 신분,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타 특징에 기초한 차별

## 노동 및 고용

Revlon은 제3자에게 해당 노동 및 고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Revlon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제3자 파트너와만 함께 일할 것입니다.

- 현지의 법률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법정 최소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보상 및 수당을 제공. 수당 지급에 대한 불법적 감액은 금지.
- 현지의 법률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채택
-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단체 조직 및 교섭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
- 직원 모집, 고용, 업무 배치, 선정, 교육, 개발, 승진, 전근, 강등, 징계, 보상 및 해고와 관련하여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

## 동물의 인도적 취급

Revlon은 당사 제품과 관련하여 동물 시험의 이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고 사전에 Revlon에 통지된 경우 이외에는 당사에 공급되는 재료에 대하여 동물 시험을 하거나 동물시험이 실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품질 및 안전성

Revlon은 사업을 당사 제품의 제조, 표지 및 유통을 규제하는 모든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며 제 3자 파트너들에게 Revlon 제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Revlon은 제 3자 파트너들이 Revlon 제품(제품의 요소 포함)을 각 업계에서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제조, 유통 및 전문 서비스 관행에 따라 생산, 포장, 저장, 배송 및 취급할 것을 기대합니다.

Revlon은 또한 제 3자 파트너에게 제품 재료 및 안전에 관련된 모든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규제

Revlon 제품을 판매하거나 Revlon 제품 판매를 매개하는 제3자 파트너는 Revlon과 협력하여 모든 규제, 제품 등록 및 수입/수출 요건이 충족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청 계약

제3자 파트너는 Revlon에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Revlon 사업 또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그들의 하청업자가 본 제3자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동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 파트너는 자신의 하청업자의 알려진 또는 의심스러운 본 제3자 행동 강령이나 해당 법률의 위반을 신속히 Revlon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무역 규정

Revlon의 제3자 파트너는 항상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해당 무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 어디에서 사업 활동을 하든 Revlon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무역법에 따라 Revlon의 제3자 파트너는 북한 또는 시리아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사업 활동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는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판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쿠바, 이란 또는 수단에서의 또는 이러한 국가들과 관련한 사업 활동이 미국의 무역법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Revlon으로부터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러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및 <http://apps.export.gov/csl-search#/csl-search> 상으로 온라인으로 식별되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실체와 Revlon을 대신하여 또는 Revlon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국의 무역규정 역시 Revlon 및 제3자 파트너에게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aspx>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별 제재를 준수하고 Revlon의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의하여 허가되지 않은 보이콧에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보이콧(anti-boycott) 준수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bis.doc.gov/index.php/enforcement/oac>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수 모니터링

Revlon은 준수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실사 또는 자가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현장 감사에 협조하거나, 또는 표준 감사 절차를 이용하여 수행된 최근 감사의 증거를 모든 조사 결과와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직원, 에이전트, 하청업자에 의한 본 제3자 강령이나 해당 법률의 의심스러운 위반을 Revlon 규정준수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Revlon 사업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직원, 에이전트 및 하청업자가 본 제3자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본 제3자 행동강령이나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면(본 제3자 행동 강령이나 해당 법률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지 못하는 것 포함) Revlon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며, 여기에는 시정 조치 계획의 실행, 일부 또는 모든 주문이나 기타 계류 상태인 사업의 취소,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비용이나 경비의 지급 또는 상황의 거부, 여러분과의 사업 관계 종료, 그리고/또는 이용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형법상의 구제 추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제 3 자 행동 강령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https://www.revloninc.com/suppliers/code-of-conduct>에서 다른 언어로 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 3 자 행동 강령에 관한 질문은 Revlon 규정준수 부서([compliance@revlon.com](mailto:compliance@revlon.com))에 보낼 수 있습니다.

**REVLON 규정준수 부서**

**844-718-6403**  
**+1-704-916-0601**  
**compliance@revlon.com**

